# 農家의 債務不履行과 政策課題*

徐 鍾 赫**
魚 明 根***

Ⅰ. 序 論
Ⅱ. 債務不履行의 理論的 檢討
Ⅲ. 債務不履行 現況
Ⅳ. 債務不履行의 決定要因과 展望
Ⅴ. 要約 및 結論

## Ⅰ. 序 論

최근 負債의 累增과 함께 農家의 債務償還能力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債務不履行率이 증가하고 있다. 農家의 債務不履行 증가는 短期的으로 일선 農業金融機關의 효율적인 資金運用을 저해하게 되며, 長期的으로는 經營收支를 악화시킴으로써 農業金融發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는 政府가 農漁家私債의 代替를 위하여 지난 87년 3월 이후 공급된 약 9,527억원에 달하는 公金融이 擔保能力이 취약한 小農들에게 信用保證으로 대출됨에 따라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農家의 債務不履行이 최근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제약으로 잘 밝혀지지 않고 있다[1]. 발표되지 않은 農業金融機關의 非公式 資料에 의하면 최근 農家의 制度金融에 대한 債務不履行率은 貸出殘額의 약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2] 실제는 그 이상인 것으로 推定된다[3].

農家의 債務不履行 증가가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農村地域에서 債務不履行 農家의 증가는 制度金融機關의 이들에 대한 信用貸出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農村金融社會의 不信風潮를 만연시킴으로써 農村 金融市場의 硬直化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農村 金融市場의 硬直化는 必要資金의 貸借時 필요이상의 담보제공을 要求하게 되는 바 이는 金融費用의 추가를 뜻한다. 이

* 本論文은 筆者가 1987년 중에 수행한 「農家의 債務履行과 金利負擔에 관한 硏究, 韓國農村經濟硏究院」의 內容中 一部를 재정리한 것임.
** 首席硏究員.
*** 硏究員.

[1] 農家의 債務不履行 現況과 그 要因에 대해서는 金榮喆의 硏究(1978)가 있음.
[2] 農協中央會, 1986(未發表資料)
[3] 農業關聯 金融機關들이 不實債權에 대한 資料를 對外的으로 발표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不實債權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감독과 各金融機關內部에서의 規制 및 金融機關 利用者들에게 유지해야 하는 信用 등의 이미지 때문에 그 실적의 발표를 꺼리고 있으며 各金融店鋪에서도 過小評價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資金의 供給者는 보다 안전한 貸出만을 찾게 되고 資金의 需要者는 필요한 資金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農業金融機關의 資金運用과 經營收支를 악화시킬 수 있다. 農家의 債務不履行 증가는 貸出者의 입장에서 볼 때 債權의 固定化를 뜻하게 되며 이는 擔保權의 행사 등에 의해서 貸出金을 회수하지 않는 한 다른 資金需要者에게 必要資金을 공급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貸出資金의 고정화는 資金利用의 効率性과 配分의 公平性의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된다. 貸出資金의 回收困難으로 특정농가에 계속된 자금대출은 보다 효율성이 높은 다른 농가의 자금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한편 초과수요가 지배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제도금융시장(특히 정책자금)에서 어느 특정농가만이 계속해서 상기자금을 사용할 경우 여기서 소외된 많은 농가들은 금융이용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 금융배분에서의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農家의 債務不履行은 農村金融機關의 貸出金에 대한 利子收入 감소나 나아가서 심한 경우 貸出金自體에 대한 回收不能으로 인한 營業收入의 감소로 경영수지의 악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農家의 債務不履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農業者에 대한 信用保證基金의 規模와 保證利子率의 調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擔保提供能力이 부족한 農家들의 信用擴大를 위하여 운영되어 왔던 農林水産業者 信用保證基金은 保證限度 및 요율의 결정이 農家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들이 고려되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보다 높은 農家의 債務不履行은 보다 많은 信用保證基金의 規模를 필요로 함을 뜻하며(農家에 대한 一定 金額의 信用保證을 전제로 가정함), 한편 保證에 대한 料率의 引上이 불가피함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문제는 특히 정부가 87년 3월 16일 발표하여 실시하고 있는 영세소농에 대한 사채대체자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크게 우려되고 있다. 총 9,528억원에 달하는 私債代替資金의 支援(1ha미만 :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7%;1ha 이상 : 2년상환, 연리 10%)은 그 利用農家의 약 86%가 1.5ha 미만의 小農으로서(徐鍾赫外, 1988) 그들의 대부분이 擔保 또는 信用狀態가 劣惡하여 대출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높은 債務不履行 展望은 과거 61년에 있었던 「農漁村高利債整理」 당시 回收不能의 不實債權 發生率이 전체의 약 59%(1968년 기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높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政策代案의 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私債代替資金의 지원을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特別信用保證基金의 規模는 물론 代替資金利用農家의 事後管理 등에 대한 方向의 設定은 農家의 債務不履行 현황과 그 요인 등이 규명됨으로써 쉽게 결정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農家의 債務不履行의 現況과 그 요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私債代替農家의 債務不履行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였다.

本論文의 分析에 이용된 資料는 單位 農協과 農家調査를 통하여 얻어졌다. 農業地帶別(도시근교, 평야, 중간 및 산간)로 有意選定된 4개郡(충남천원, 전북부안·진안 및 전남 함평)으로부터 그 지역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총 7개

의 單協(天原郡 1個所, 그외 각 2개소)을 선정하여 農家에 대출된 各種資金(政策資金, 相互金融 및 私債代替資金)과 延滯現況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農家調査는 앞에서 有意選定된 單位組合관내의 1개 自然部落內 農家中 無作爲로 추출된(部落當 15戶 농가 내외) 標本農家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農家調査의 標本數는 총 121農家이며 주로 農家資産 및 負債現況 등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本論文의 분석에는 二元選擇分析(Binary Choice Analysis)에서 많이 利用되고 있는 Logit 模型을 活用하였다.

## Ⅱ. 債務不履行의 理論的 檢討

### 1. 債務不履行의 槪念과 測定

農家의 制度金融에 대한 債務不履行의 定義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民法에서 규정하고 있는(民法 총칙 390조) "債務不履行"의 定義를 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을 뜻하며, 이때 債權者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損害賠償을 債務者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農家의 債務不履行에 대한 현실적인 問題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무액의 원리금상환의 지체와 그것이 갖는 농업금융상의 제반문제를 감안할 때 앞에서 제시한 民法上의 定義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다.

農家의 債務不履行은 債權者인 金融機關의 입장에서 보면 상환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債權의 回收가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며(延滯債權), 이는 與信資金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正常 : 農家가 보유하고 있는 3개월 미만의 延滯貸出中 償還이 확실시 되는 債權.

要注意 : 農家가 보유하고 있는 3～6개월의 延滯貸出金中 回收가 확실시 되는 債權

固定 : 6개월 이상의 延滯, 또는 回收가 불확실한 6개월 미만의 延滯貸出金.

回收疑問 : 固定으로 분류된 貸出金中 損失發生이 예상되나 현재 損失額을 확정할 수 없는 擔保不足 貸出金.

推定損失 : 고정으로 분류된 貸出金中 回收不能이 확실하여 損費處理가 불가피한 담보부족 대출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不良債權"은 위의 分類中 回收可能性에 問題가 있는 "回收疑問"과 "推定損失" 債權, 그리고 상환기일 이전에라도 債務者 또는 債務關聯者의 信用狀態에 변동이 생겨 "回收可能性이 희박해진 채권"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분류는 債權回收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不良債權에 대한 定義는 經濟社會與件에 따라서 또는 學者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Melichar (1987)는 美國 農業金融機關의 財務狀態를 분석하면서 90일 이상의 延滯貸出金을 不良債權(non-performing)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橫川洋(1986)은 日本 農家의 負債問題를 분석하면서 回收가 곤란한 固定化된 債權을 不良債權으로 定義하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① 상환예정일 도래 후 1년 이상 연체되고 있는 채권, ② 貸越制度 및 購買未收金의 경우, 經營規模의 확대가 없는데도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우, ③ 기타 표면상으로는 延滯는 없으나 실제로 고정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債權을 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農業金融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農協에서는 延滯期間이 1년 이상된 채권을 不健全債權으로 分類하여 別途管理를 하고 있으나 不實債權과는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延滯期間에 의한 不健全債權의 區分도 우리의 農業金融現實을 감안해 볼 때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선 農業金融機關에서는 債務者가 約定期日에 주어진 債務額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約定利子만 지불하면 元金에 대해서는 再貸出의 형식을 취하는 書還制度가 일반화되고 있어 金融機關의 公式文書에 나타난 延滯期間만으로 不健全債權의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農家의 債務不履行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계측할 수 있다.

(1) 一定會計期間中 未回收된 債權額의 比率 : 農家가 一定期間(예, 1년간)中 상환해야 할 총액(要償還額)중 상환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

(2) 總貸出殘額에 대한 約定償還日을 경과한 貸出金의 比率 : 일정 시점에서 金融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貸出債權總額中 償還期日이 경과된 延滯額의 비율을 말한다.

(3) 債務不履行 農家比率 : 일정 시점에서 파악된 延滯農家의 全體農家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農家를 基準으로 債務不履行狀態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金融基準의 債務不履行 狀態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4) 未償還指數 : 償還期日이 경과된 延滯債務는 그 기간에 따라 不實債權化할 확률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장기화된 延滯貸出金은 短期性에 비하여 不實債權化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서로 기간이 다른 연체貸出金에 일정한 비중을 주어(예 : 1년미만 0.5, 1년 이상 1.0) 債務不履行額을 계산하고 이를 총대출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 2. 債務不履行의 發生原因

農家의 債務不履行은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anderatne, 1983).

지금까지 보고된 農家의 債務不履行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해 보면 크게 農家內部의 經營要因, 農業金融制度 및 農民들의 價値觀으로 구분되고 있다(金榮喆, 1978; Bottomley, 1983; Sanderatne, 1983).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農家負債의 規模 : 다른 여건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負債의 規模가 큰 農家는 작은 농가에 비하여 債務履行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農家立場에서 볼 때 負債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많은 元利金支拂의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農家內部의 資金運用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특히 차입된 資金의 投資收益率이 借入金利보다 낮을 때 그리고 借入金이 短期的인 運營資金에 이용되기 보다는 中長期性 固定資本投資에 이용될 때 더욱 문제가 된다.

(2) 農家所得 : 農家所得이 높은 農家는 그렇지 않은 農家에 비하여 借入金에 대한 償還能力이 높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소득이 높은 農家의 農家經濟 剩餘가 낮은 농가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특히 所得水準이 낮은 零細小農들의 경우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生計費가 所得을 초과함으로써 借入金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純所得이 家計部門에 충당됨으로써 일반적으로 借入金에 대한 償還率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負債比率(總負債／自己資産) : 農家의 總資産에 대한 負債의 構成이 높은 것은 財務構造의 안전성이 낮음을 뜻한다. 負債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土地, 大動物과 같은 固定資産의 價値下落時 債務償還이 어려워짐을 뜻하며 이는 總資本의 收益率이 낮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擔保資産의 價値 : 채권자에 대한 농가의 담보제공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채무불이행시 담보물건의 처분과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채무이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때문이다.

(5) 實質利子率(=명목이자율—물가상승율) : 높은 물가상승율 하에서 낮은 이자율(명목)은 농가의 채무이행을 높인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實質金利가 낮은 유리한 자금의 계속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촌제도금융시장이 초과수요상태에 있고 연체이자율이 私債利子率보다 낮을 경우에는 制度金融에 대한 償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는 기대출되어 이용하고 있는 資金이 延滯利子를 지불하더라도 他資金에 비하여 유리하기 때문이다.

(6) 農家所得의 變異 : 農家所得의 季節間 또는 年間變動이 심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농가의 채무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농가의 자금운용이 소득의 심한 변동으로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의 심한 변동이나 기후 등의 영향에 의한 농업소득의 심한 편차는 그만큼 농가의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는 농업부문의 투자나 다음기의 소득에 負의 效果를 미치게 한다. 한편 農家의 農外所得은 農業所得에 비하여 月別 또는 年間의 편차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農外就業農家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전업농가에 비하여 채무이행률이 높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7) 金融機關의 債務管理 : 차입금의 상환은 대부분의 경우 차입자인 농가로 하여금 상환의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제약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借入金을 당초의 目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확인과 감독, 借入金 상환에 대한 催告, 채무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적절한 대책의 수립, 그리고 영농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은 농가의 차입금 상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ttomley, 1983: 金榮喆, 1978).

(8) 其他要因 : 農民들의 부채상환에 대한 價値觀, 債務不履行에 대한 분명히 명시된 규제 등은 農家의 債務履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 및 질병 등과 같은 우발적인 요인도 債務不履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Ⅲ. 債務不履行 現況

### 1. 延滯規模 및 延滯率

農家의 債務不履行 狀態를 일차적으로 파악키 위하여 흔히 이용되고 있는 指標는 延滯額의 規模와 전체 負債額에 대한 이의 비율이다. 이는 위의 지표를 통하여 農家의 債務不履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標本農家의 戶當 平均 延滯額(制度金融에 한함)은 72만3,600원으로 制度金融負債額 188만3,200원의 38.4%를 점하고 있다(86년말 기준)[4].

[4] 金榮喆의 硏究(1978)에 의하면 農家의 制度金融에 대한 채무불이행률은 27.3%로 나타났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의 측정은 年度中 要償還額에 對한 年度中 未償還額의 比率로 파악하였음.

表1 농가호당 제도금융차입금 연체액(1986년말)

| 구 분 | 제도금융 부채액 (A) | 연 체 액 (B) | 연체비율 (B/A) | 연체농가비율 (연체농가/총농가) |
|---|---|---|---|---|
| | 천원 | 천원 | % | % |
| 도시근교 | 1,727.3 | 872.7 | 50.5 | 38.6 |
| 평 야 | 2,129.7 | 659.4 | 31.0 | 45.3 |
| 중 간 | 1,651.2 | 374.4 | 22.7 | 30.2 |
| 산 간 | 1,910.0 | 1,037.5 | 54.3 | 20.0 |
| 평 균 | 1,883.2 | 723.6 | 38.4 | 35.1 |

表2 地域別 연체농가의 평균 연체액(1986년말)

| 구 분 | 호당평균연체액 |
|---|---|
| 도시근교 | 2,259천원(11%) |
| 평야 | 1,455 (71 ) |
| 중간 | 1,238 (60 ) |
| 산간 | 5,188 (249 ) |
| 평균 | 2,063 (100 ) |

자료 : 표본지역 해당부락(7개 부락) 전수조사 결과.

全體 農家中 延滯된 債務를 지고 있는 農家는 35.1%로서 金額對比 延滯額比率 38.4% 보다 3.3%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表1〉.

地域別 延滯狀態의 차이를 보면 도시근교 및 산간지역의 農家가 평야 및 중간지역에 비하여 延滯率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全體農家에 대한 연체농가의 비율을 보면 도시근교 및 평야지역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근교 및 산간지역 연체농가의 호당평균 연체액 규모는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表2〉.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근교 및 산간지역의 농가중 상당수가 시설원예, 축산(한우) 및 특용작물(약초)과 같은 새로운 소득작물을 도입하였으나 가격의 폭락으로 영농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2. 延滯期間

農家의 債務不履行은 延滯債務의 期間에 따라

表3 期間別 延滯額 分布(1986년말)

| 區 分 | ~6개월 | 6개월~1년 | 1년~2년 | 2년 이상 | 계 |
|---|---|---|---|---|---|
| 금액(천원)[1] | 435 | 153 | 1,065 | 359 | 2,049 |
| % | 21.2 | 7.5 | 52.0 | 19.3 | 100.0 |

1) 표본농가중 연체농가의 호당 평균 금액임.

表4 농가 연체채무의 대출유형별 구성

| 구분 \ 조사시기 | 1985년말 | 1986년말 |
|---|---|---|
| 담 보 대 출 | 25.4% | 22.7% |
| 보 증 부 대 출 | 11.3 | 4.9 |
| 신 용 대 출 | 63.3 | 72.4 |
| 계 | 100.0 | 100.0 |

자료 : 농협 중앙회 조사부, 1987

그 성격이 다르다. 연체기간이 긴 것은 상대적으로 부실채권화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元利金의 회수곤란으로 貸出者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표본농가의 연체기간별 연체액의 분포를 보면 전체의 71.3%가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불량채권으로 나타났다〈表3〉. 이중 특히 貸出金의 회수가 크게 의문시되는 2년 이상 연체액은 전체의 19.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기간이 장기성인 연체채무의 비율이 높은 것은 82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부채의 누증과 이에 대한 상환능력의 저하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 3. 擔保의 有無와 延滯

현재 우리나라 농촌 제도금융시장에서는 농가가 一定額 이상의 차입을 할 경우 농가소유 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他人의 보증을 요구한다. 이는 借入者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담보의 확보로 예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편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

表5 경지규모별 농가 평균 연체비율비교(86년말)

| 구 분 | 1.0ha미만(Ⅰ) | 1.0~2.0ha(Ⅱ) | 2.0ha이상(Ⅲ) | 총 평 균 |
|---|---|---|---|---|
| 제도금융부채(A) | 161만원 | 274 | 1,200 | 220 |
| 연체금액(B) | 56만원 | 82 | 171 | 72 |
| 연체율(B/A) | 34.8%($\bar{X}_1$) | 29.9($\bar{X}_2$) | 14.3($\bar{X}_3$) | 32.7 |

$F=1.23$

면 담보의 제공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높은 금융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信用貸出에 비하여 높은 상환율을 보이게 된다. 이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 채권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시 담보물건의 처분과 같은 법적절차를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債務履行을 할 수밖에 없다는 債務者들의 共通的인 인식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가보유 연체채무액중 신용대출의 구성비가 담보대출에 비하여 약 3배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 될 수 있다[5]〈表4〉.

### 4. 農家의 經營規模와 延滯

지금까지 小農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경영규모와 채무불이행과의 關係는 학계는 물론 농업금융 관련자들간에 논란의 대상이었다. 小農은 大農에 비하여 낮은 소득수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소비성향 때문에 채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후진국의 경우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小農의 채무불이행률이 大農의 그것에 비하여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주장의 근거는 제도금융부문의 신용제한으로 인하여 자금수요의 대부분을 私金融에 의존하고 있는 小農들의 私債에 대한 채무불이행율이 制度金融의 그것에 비하여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小農과 大農間의 채무불이행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大農이 小農보다 私金融과 公金融 모두 약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金榮喆, 1978).

농가의 經營規模에 따른 債務不履行의 차이를 분석키 위하여 표본농가를 경지규모(自作地+賃借地)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제Ⅰ그룹은 경지규모 1.0ha 미만, 제Ⅱ 그룹은 1.0~2.0ha, 그리고 제Ⅲ 그룹은 2.0ha 이상 농가로 하였다. 먼저 제도금융에 대한 각 그룹별 평균연체율을 보면 Ⅰ그룹의 농가가 34.8%로서 가장 높고 2.0ha 이상 농가는 14.3%로서 가장 낮았다〈表5〉. 그러나 이와 같은 각 그룹간의 평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세 그룹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 그룹의 평균연체율이 같은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分散分析을 시도한 결과($H_0 : \bar{X}_1=\bar{X}_2=\bar{X}_3$) 계산된 $F$값이 1.23으로서 $\alpha=5\%$ 수준에서 세 그룹의 평균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그룹 중 두 그룹 평균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시도하였으나($H_0 : \bar{X}_i-\bar{X}_j=0$) 各 그룹 평균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6〉. 즉 $\alpha=5\%$ 수준에서 각 그룹별 평균연체율의 차이는 上下信賴區間에 위치함으로써 그룹간 평균의 차이는 없다는 가설($H_0 : \bar{X}_i-\bar{X}_j=0$)이 성립되었다.

한편 농가의 경지소유규모를 기준으로 영농규모를 구분하여 각규모그룹간 평균 연체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룹간에 큰 차이

[5] 1986년말 기준 농가보유 제도금융부채중 신용대출에 의한 부채가 약 57%를 점하고 있는(농협중앙회 조사부, 1987) 반면 연체채무중 신용대출은 72.4%를 점하고 있다.

表6 경지규모별 제도금융 연체율 평균의 통계적 비교[1)]

| 비교그룹 | 하위신뢰구간 | 그룹간 평균의 차이 $(\bar{X}_i-\bar{X}_j)$ | 상위신뢰구간 |
|---|---|---|---|
| Ⅰ－Ⅱ | −0.1277 | 0.016 | 0.1602 |
| Ⅰ－Ⅲ | −0.5187 | −0.222 | 0.0745 |
| Ⅱ－Ⅲ | −0.5428 | −0.2383 | 0.0661 |

1) $\alpha=0.05$ 수준에서 그룹 평균의 차이에 대한 $t$-test($H_0$ : $\bar{X}_i-\bar{X}_j=0$)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徐鍾赫外, "農家의 債務履行과 金利負擔에 關한 硏究", 1988. 6).

앞의 分析結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른 제도금융에 대한 채무불이행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농가에 대한 자금대출의 관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와 같이 농가대출에 담보 또는 保證(연대보증)이 요구되는 상태하에서는 小農들의 제도금융 자금이용이 용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制度金融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의 채무이행은 大農 이나 小農들간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小農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私債의 경우 小農이 大農에 비하여 채무불이행률이 높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金榮喆, 1978) 등을 감안해 볼 때 小農의 채무불이행률이 大農보다 높다고 단정키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農家의 資金借入이 경영규모에 따라 그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경지 또는 소유규모에 의하여 채무상환이 결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중(차입금의존도 또는 부채비율)에 따라 채무이행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같은 大農과 小農間의 큰 차이없는 채무불이행 결과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Ⅳ. 債務不履行의 決定要因과 展望

### 1. 分析模型

農家의 債務不履行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키 위하여 本硏究에서는 質的 選擇分析(Qualitative Choice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이는 個人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주어진 代案(Alternatives)中 하나를 선택할 確率이 얼마인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本硏究에서 위의 分析方法을 채택한 이유는 農家의 채무불이행과 이행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質的 選擇分析을 위한 統計模型으로는 線型 確率模型(Linear Probability Model: LP), Probit 및 Logit 模型이 있다. 이중 本硏究에서는 線型確率模型과 Logit 模型을 이용하였으며 이들의 基本的 特性은 다음과 같다[6]. 즉,

$$Y_i=\begin{cases}1 & I_i>I_i^* \text{ 일 경우}\\ 0 & I_i<I_i^* \text{ 일 경우}\end{cases}$$

단, $Y_i=$ $i$농가의 채무불이행여부
$Y_i=1$ : 채무불이행
$Y_i=0$ : 채무 이행

$$I_i=\alpha+X_i'\beta$$

$X_i$=채무이행과 관련된 변수의 행렬
$\alpha, \beta$=파라메타 벡타
$I_i^*$=臨界値(Threshold Value)

위의 기본모형은 아래와 같은 確率模型으로 바꿀 수 있다.

$$P_i=F(I_i)=I_i=\alpha+X_i'\beta : LP \text{ 模型}$$

6 Pindyck, R. S. &. D. L.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pp. 237-240.

$$P_i = F(I_i) = \frac{1}{1+e^{-I_i}}$$

또는 $\mathrm{Log}\left(\frac{P_i}{1-P_i}\right) = \alpha + X_i'\beta$[7] : Logit模型

여기서

$P_i = i$ 농가의 채무불이행 확률

$F(I_i)$ = 누적 확률 분포 함수(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개인의 어떠한 선택에 관련된 요인의 分析을 위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는 Discriminant Analysis에 비하여 線型確率模型이나 Logit 模型은 關聯要因의 分析은 물론 추정된 파라메터와 各個人의 特性値를 이용하여 그들의 선택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iebert, 1983). 한편 線型確率模型은 線型的인 累積確率 分布를 가정함으로써 예측된 確率値($\hat{P}_i$)가 0과 1을 넘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Logit 模型은 Logistic 確率分布를 가정함에 따라 그와 같은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Pindyck & Rubinfeld, 1976).

## 2. 分析結果

分析에 이용된 변수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農家의 債務不履行($DF$)은 延滯有無와 그 기간을 가지고 파악하였다. 어느 농가가 조사시점에서 延滯狀態下에 있는 경우 그 농가는 $DF_0=1$로 그리고 연체가 없을 경우에는 $DF_0=0$으로 하였다. 한편 延滯期間에 따라 債務不履行의 정도가 다른 것을 감안하여 延滯期間 1년 이상($DF_1=1$)과 1년 이하($DF_1=0$)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獨立變數로는 資料의 제약상 농가의 경영규모, 保有負債額, 차입금 의존도, 예저금에 대한 부채비율 및 農家口員中 農外就業者數만을 分析에 이용하였다. 線型確率模型($LP$)과 Logit 模型을 이용하여 추정한 채무불이행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表7〉. 먼저 단순한 채무불이행 여부($DF_0$)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LP$ 模型의 추정결과를 보면, 추정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 주는 $R^2$ 값은 0.23으로 상당히 낮았다. 이는 $LP$ 모형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인 낮은 $R^2$ 값(대부분 0.2~0.3)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分析에 이용된 說明變數들의 農家의 채무불이행에 미친 효과는 농가보유 부채액(제도금융)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農家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농가의 부채규모가 클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그외 경영규모, 장·단기 지급능력 및 농외취업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7 農家延滯에 미친 要因의 推定結果

| 설명변수[1)] | $LP$ 모 형 | Logit 모 형 |
|---|---|---|
| 상 수 | 0.2423 ( 1.382) | 1.2750* (2.63) |
| $X_1$ | 0.1169 ( 1.585) | −0.6931** (3.64) |
| $X_2$ | −0.0003 (−0.798) | — |
| $X_3$ | — | 0.0002 (1.20) |
| $X_4$ | 0.0007** ( 2.511) | — |
| $X_5$ | — | 0.0033* (3.33) |
| $X_6$ | −0.1514 (−0.974) | 1.4828 (1.74) |
| $X_7$ | — | −0.0051 (0.07) |
| 종속변수 및 $R^2$ | $DF_0$, $R^2=0.23$ | $DF_1$ |

1) $DF_0$ : 연체유무더미($DF_0=1$, 연체농가)
$DF_1$ : 1년 이상 연체유무더미($DF_1=1$, 1년 이상 연체농가)
$X_1$=농외취업자수(명), $X_2$=소유 경지 면적(평)
$X_3$=경영 경지면적(평), $X_4$=제도금융부채액(만원)
$X_5$=총부채액(만원), $X_6$=부채/고정자산
$X_7$=부채/예저금,
2) ** : $\alpha=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
* : $\alpha=1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
3) ( ) 속은 $t$-값($LP$ 모형) 또는 $\chi^2$값(Logit 모형)

[7] Logit 模型의 변형은 다음과 같은 식의 전개로 된다.

$$P_i = \frac{1}{1+e^{-I_i}} \rightarrow 1+e^{-I_i} = \frac{1}{P_i}$$

$\therefore e^{-I_i} = \frac{1-P_i}{P_i}$이며 이는 $e^{I_i} = \frac{P_i}{1-P_i}$으로 바꾸어 쓸수 있으며, 따라서

$$\log\left(\frac{P_i}{1-P_i}\right) = I_i = \alpha + X_i'\beta,$$

한편 채무불이행을 나타내 주는 기준을 연체기간 1년 이상($DF_1=1$)과 그 이하 ($DF_1=0$, 비연체농가포함)로 區分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총부채 보유액 및 농외취업자 수가 각각 $\alpha=10$%와 5%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외취업이 농가의 채무불이행에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農外就業에 따른 농가의 자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負債元利金의 適期상환이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의 경영규모(경영 면적으로 측정)는 앞 *LP* 모형의 추정결과와 같이 농가의 채무불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 농업금융기관이 농가들에 자금을 공급할 때 엄격한 대출심사와 함께 담보 등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결정함으로써 대농과 소농간에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農家의 他人資本에 대한 長期支給能力의 성격을 띤 固定資産에 대한 負債의 비율은 債務不履行에 正의 효과를 보였으나 統計的인 有意性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負債에 대한 短期支給能力을 나타내 주는 예저금에 대한 부채비율도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농가의 채무불이행이 장단기 지급능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기 보다는 다음에 설명하는 농가보유 부채액에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위의 두 변수의 영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농가보유 부채액 규모(제도금융+사채)는 농가의 債務不履行의 發生確率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負債額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元利金 상환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 負債의 用途(엄밀한 의미로는 借入金의 用途) 중 약 38%(1986년말 기준,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7)가 가계비등의 충당을 위한 非生産的인 목적에 이용되고 있어 他人資本(=負債)의 收益率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負債規模의 增加에 따른 元利金상환의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表8 **Logit 모형의 예측 능력**

| 모형 | $P^*$[1] | Type Ⅰ error[2] | Type Ⅱ error[3] | 예측능력 |
|---|---|---|---|---|
| Logit | 0.5 | 1.9% | 25% | 73.1% |

1) $P^*$ : 임계치(Threshold value)
2) Type Ⅰ error : 1년 이상 연체채무를 보유한 농가를 그렇지 않은 농가로 잘못 예측할 확률.
3) Type Ⅱ error : 1년 이상 연체가 없는 농가를 있는 농가로 잘못 예측할 확률.

Logit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산된 예측능력은 〈表8〉과 같다. 즉 임계값($P^*$)을 0.5로 정했을때 각 표본의 예측치($\hat{P}_i$)가 0.5 이상일 때는 그 농가를 채무불이행농가로, 그리고 $\hat{P}_i$가 0.5 以下일 때는 채무이행농가로 분류한후 실제관찰된 농가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추정된 Logit 모형의 파라메타를 이용하여 예측된 결과와 실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표본수는 전체의 73.1%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치와 다른 26.9%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실제 1년 이상 연체를 지고 있는 채무불이행 농가를 그렇지 않은 농가로 잘못 예측할 확률(즉 Type Ⅰ error)이 1.9%, 그리고 실제로는 1년 이상 연체채무가 없는 농가를 있는 농가로 잘못 예측할 확률(Type Ⅱ error)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추정한 두 모형중 *LP* 모형보다는 Logit 모형이 농가의 채무불이행과 관

련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보다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또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감안한 모델의 예측능력도 73.1%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農家負債輕減 對策과 債務不履行 展望

정부는 87년 3월 16일과 12월 9일의 2차에 걸친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을 발표하여 82년부터 누증되어온 농어가부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총 7,528억원에 달하는 사채대체자금의 지원을 비롯하여 농수산자금의 금리인하 등 7개 사항에 걸친 특별조치로서 제2의 고리채 정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 私債代替資金은 연리 8%로서(1.0ha 이상 농가는 10%) 연리 약 25%로 추정되는 사채이자의 지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와 더불어 연도말에 갚아야 할 원금의 상환을 유예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총 4,047억원 달하는 영세농어가(소유경지 0.5ha 미만)에 지원된 중장기자금의 상환연기(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기)도 당분간 부채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 자금의 지원 대상자는 그동안 담보능력 또는 신용상태가 劣惡하여 制度金融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농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시 과연 이들로부터 지원된 자금을 적기에 얼마나 회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농업금융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1961년에 있었던 「農漁村高利債整理事業」 당시 농어가에 사채대체를 위하여 지원된 자금의 회수실적(회수기한 5년)이 고리채정리가 실시된지 7년 후인 1968년에 전체회수목표액의 약 41.4%에 불과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8]. 이와 같이 낮은 債權回收率은 당시 고리채정리의 대상자 대다수가 극빈한 영세농가로서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극히 미약하였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債權保全策이 미비된 無保證貸出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87년에 있었던 「農漁家負債輕減對策」은 短期性 資金의 상환유예를 통한 농가의 원리금 상환부담의 완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부채규모의 축소를 위한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별도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재 유예된 자금의 상환이 시작될 시기(앞으로 1~2년후)에는 농가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적기의 채무이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私債代替資金을 지원받은 농가의 대부분이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쉽게 예상된다. 참고로 사채대체지원 자금의 이용 농가를 경지규모별로 區分해 보면 0.5ha 미만 영세농이 전체 이용농가의 약 31%, 0.5~1.0ha인 농가가 36% 그리고 1.0~1.5ha인 농가가 19%로서 경영규모 1.5ha 미만의 영세·소농이 전체의 86%를 점하고 있다(徐鍾赫外, 「농가의 채무이행과 금리부담에 관한 연구」, 1988).

私債代替資金 利用農家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추정한 Logit 模型을 이용하였다. 전망에 이용된 자료는 本硏究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69호의 사채대체자금 이용농가로서 이들의 경지규모, 총부채액 등 사회

[8] '87.3.16에 있었던 「農漁家負債輕減對策」 및 '61년의 「農漁村高利債整理事業」에 對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農漁家經濟活性化 對策(1986~87)」, 農水畜協 中央會, 1988.2 참조.

表9 私債代替農家의 債務不履行 展望

| 예측모형 | 예측사항 | 예측결과 | 예측능력 |
|---|---|---|---|
| Logit | 1년 이상 연체할 확률 | 전체농가의 22% | 73.1% |

경제적인 지표들이다.

私債代替資金 利用農家들이 앞으로 그들의 債務를 상환하기 시작할 때 현재와 같은 여건이 크게 바뀌지지 않는한 延滯期間 1년 이상의 채무불이행을 할 확률은 약 22%(농가 기준)로 추정되었다〈表9〉. 이와 같은 높은 채무불이행률의 전망은 조사대상지역 전체농가들의 제도금융 연체율(금액기준)이 약 35.5%이고 1년이상 연체액이 총제도금융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약 19%임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사채대체자금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것은 사채대체자금지원 대상농가의 선정이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상환능력이나 신용도와는 별개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 V. 要約 및 結論

82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농가부채는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여 負債償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87년 3월 16일에 「農漁家負債輕減對策」을 발표하고 사채대체자금 등 7개 항에 달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特別措置에도 불구하고 農家負債問題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위의 조치가 利子率引下와 제도금융의 상환유예 등 금융정책에 크게 치중함으로써 부채증가의 억제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득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負債輕減特別對策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세·소농에 지원된 총 7,528억원에 달하는 사채대체자금의 회수이다. 위 자금의 이용 대상은 그동안 담보능력이 취약하여 제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가들로서 전체 이용농가의 86%가 경영규모 1.5ha 미만의 영세소농들이다. 農家에 지원된 사채대체자금의 부실화는 과거에도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즉 1961년에 있었던 「農漁村高利債整理事業」시행 후 7년이 경과된 1968년까지(당초 회수기한 1966년) 회수된 債權額은 목표액의 41%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59%는 결국 정부 및 農協이 부담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農家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채대체자금이용농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本硏究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農家 및 일선 농업금융기관의 금융관련자료를 분석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첫째, 전체농가중 제도금융에 대한 채무불이행농가의 비율은 35.1%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제도금융 부채액에 대한 연체액은 약 38%로 나타났다. 한편 期間別 연체액의 分布를 보면 전체연체액의 71.3%가 1년 이상의 不良債權이었으며 2년 이상의 연체액은 전체의 19.3%로 나타났다.

둘째, 債務不履行농가의 특성을 보면 경지규모(또는 소유규모) 및 자산액의 규모가 채무이행농가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負債規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農家의 營農規模에 따른 채무이행의 차이가 있는 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t$-test), 규모 계층간 制度金融의 채무불이행률(연체액/

제도금융부채액의 비율로 측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線型確率模型(Linear Probability Model)과 Logit 模型을 利用, 農家의 債務不履行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 바 Logit 모형이 통계모형으로서 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Logit 모형의 계측결과를 보면 우선 채무불이행(연체기간 1년 이상 기준)에 대한 농가기준 예측능력은 73.1%로서 높게 나왔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농가보유 총부채액과 農外就業이었다. 즉 농가부채 규모의 증가는 채무불이행을 촉진시켰으며 가구원의 농외취업은 채무이행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의 영농규모 및 負債에 대한 長期支給能力(총부채액/총자산액으로 파악)은 농가의 채무불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부채가 資産構造上의 문제(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낮은 장기지급 능력보다는 자금운영의 문제로 인한 단기지급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87년 3월 16일에 있었던 「農漁家負債輕減對策」에 따라 지원된 사채대체자금 이용농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ogit 模型을 이용하여 그 전망을 추정한 결과 적기에 채무상환을 못하여 1년 이상의 연체를 지게 될 농가가 전체의 약 22% 정도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지역에서 1년 이상 연체된 제도금융액이 전체 제도금융대출잔액의 약 19%였음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무리한 전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을 감안하여 정부 및 농업금융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農家 (특히 영세 소농가)에 지원된 사채대체자금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私債代替資金 사용농가들을 농가의 재무구조에 따라 회수가능, 회수의문 및 회수곤란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회수가 의문시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단기 자금운영은 물론 신규투자 등과 같은 장기자금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경영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것으로 판정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행정기관과의 협조하에 농업경영주 또는 그 가구원들에 대한 농외취업교육 및 고용기회를 알선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농가들을 분류하는 데 주의해야 할 점은 농가의 부채 및 자산규모 이외에도 최근 몇 년간 대상농가들의 부채규모의 증가와 구조 그리고 자금운영상의 수지현황 및 경영주의 경영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가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사채대체를 위하여 500억원의 특별신용보증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영세·소농들의 높은 채무불이행률(약 20% 내외)을 감안할 때 당초 10%의 채무불이행률을 감안하여 결정된 500억원의 특별신용보증기금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총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金榮喆, "農家의 借入金償還에 대한 理論的 考察", 「農協調査月報」, 農協中央會, 1978. 12.

徐鍾赫, 朴成在, 「農家資産 및 借入構造의 變化에 관한 硏究」, —農家負債의 增加要因과 償還能力檢討를 중심으로—,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5.

徐鍾赫 外, 「農漁家經濟 活性化 對策('86~'87)」 農·

水・畜協 中央會, 1988. 2.

徐鍾赫, 薛光彦, 朴成在, 「農家의 債務履行과 金利負擔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 6.

北海道 綜合文化開發機構, 「冷害被害農家經濟調査報告書」, 1985.

高橋五郎, "農家負債の固定化と農協の對應," 「農業と經濟」, 1986. 12.

Anthony Bottomley, "Interest Rate Determination in underdeveloped Rural Areas," *Rural Financial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ed. J. D. von Pischke, Dale W. Adams, Gordon Donald,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83.

Collins, R. and R. D. Green, "Statistical Methods for Bankruptcy Forecasting,"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 34 1982.

Domencick, T. A. and D. McFadden, *Urban Travel Demand: A Behavioral Analysis*, North-Holland Publishing Co. N. Y. 1975.

Feder, G. and R. E. Just, "A Study on Debt Servicing Capacity Applying Logit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and Economics*, 4, 1977.

Melichar, E., "Financial Condition of Agricultural Banks," *Agricultural Finance Review*, V. 47 1987.

Nimal Sanderatne, "An Analytical Approach to Loan Defaults by Small Farmers," *Rural Financial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ed. J. D. von Pischke, Dale W. Adams, Gordon Donald,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1983.

Pederson, G., M. Boehlje, D. Doye and R. Jolly," Resolving Financial Stress in Agriculture by Altering Loan Terms: Impacts on Farmers and Lenders," *Agricultural Finance Review* V. 47 1987.

Robert S. Pindyck and Daniel L. Rubinl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McGraw-Hill Book Company, 1976.

Shepard, L. E., R. A. Collins, "Why Do Farmers Fail?: Farm Bankruptcies 1910~78,"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Nov. 1982.

Vogel, R. C., "Rural Financial Market Performance: Implication of Low Delinquency R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 63, No. 1, Feb. 1981.